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763호

시행일자 2020. 1. 2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심사지침」 개정 공고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가.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5호, 2019.8.1.시행)
- 나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422호 (2019.12.27.)
- 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425호 (2019.12.30.)
- 라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428호 (2019.12.31.)
- 마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429호 (2019.12.31.)

3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○ 공고 주요내용

- 나.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: 총 14항목 (신설 : 12항목, 개정 : 2항목)
- 다. 「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」 심사지침 개정
- 라.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: 총 13항목 (신설 : 13항목)
- 마. *그간 공개·운영하던 심사지침 : 총 64항목

○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(마. 첨부파일 참조)

○ 관련 부서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정비추진단 심사기준정비실무팀

※ '나~다' 호 관련 대의협 제813-11656호 (2019.12.30.) / 대의협 제813-11704호 (2019.12.31.)로 기안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: 1. (2019-428) 공고 주요내용 1부.
2. (2019-428) (2019-429) 심사지침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